

루소의 공화국, 혹은 가족과 사회의 부재: 이폴리트 텐의 루소 비판

최일성 | 한서대학교

| 논문요약 |

국가는 왜 난폭해졌는가? 혁명은 왜 전제주의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자코뱅의 공포 정치에 대한 경험은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에 근거를 둔 공화국이 그러한 주체들의 억압체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에 19세기 사상가 이폴리트 텐(Hyppolyte Taine)은 1789년 프랑스 민중들의 열망을 공포정치로 차단해 만든 루소 이론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루소의 사상이 공화국 내부의 제 사회영역들—사적 관계—에 대한 해체를 정당화함으로써 인해 국가가 난폭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단한다. 다시 말해 루소는 국가에게 ‘일반의지’의 구현체라는 절대적인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인해 혁명이 나폴레옹의 등장과 같은 전제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텐을 비롯한 제3공화국 건설가들은 따라서 혁명적 변화의 역사과정에서 가족과 사회를 부당하게 희생하며 국가에게 부여한 지나친 특권 속에서 공화국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루소의 공화국에 대한 텐의 비판은 이러한 과정의 핵심을 구성하였다.

1. 루소와 프랑스 제3공화국: 국가는 왜 난폭해졌는가?

루소(J.-J. Rousseau)의 정신에 따라 ‘군주주권’을 ‘인민주권’으로 전환하길 원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가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구성된 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그 뜻을 실현코자 하였다. 이때 실질적인 걸림돌은 혁명으로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개인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통합된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혁명정신의 이념적 슬로건이었던 ‘형제애(fraternité)’의 이상을 동원하여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루소정신의 실천가였던 1793년 자코뱅의 이미지는 형제애로 충만한 ‘공화주의’의 이미지라기보다는 폭력이 난무하는 ‘테러리즘’의 이미지에 가까웠다.¹⁾

자코뱅의 공포정치에 대한 경험은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에 근거를 둔 공화국이 그러한 주체들의 억압체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19세기 말 보불전쟁의 패배로 제2제정의 몰락을 경험한 제3공화국 건설가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그들이 보기에 프랑스 민중들의 혁명과업들은 모두 전제정치로 종결되었고,²⁾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혁명도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파리꼬뮌의 내란을 수습한 프랑스인들은 이른바 ‘진정한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가 무

1) 자코뱅에 의한 ‘형제애’의 적용은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비드(Marcel David)의 다음 저작을 참고할 것. Marcel David, *Fraternité et 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9* (Paris: Aubier, 1987). 그에 의하면, 1789년 5월부터 1792년 9월까지 ‘형제애(fraternité)’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평등(égalité)’의 개념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왕정의 폐지가 결의된 1792년 9월 이후 그 개념은 ‘나와 너’ 혹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형제애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당시 슬로건은 자코뱅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 주지하다시피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나폴레옹의 제1제정으로, 1830년 7월혁명은 7월 왕정으로, 1848년 2월혁명은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모순적 역사는 제3공화국 건설가들로 하여금 핏빛어린 혁명과정이 비교적 쉽게 전제군주정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사상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엇인지에 대한 사상적 고민에 몰두했다. 국가의 급작스러운 몰락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는 ‘피의 일주일’로 명명된 꼬뮤니스트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위기는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사회 제 세력들의 목소리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화국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인식케 만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국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전제정치로의 회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심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당시 지식인들은 1789년 프랑스 민중들의 열망을 공포정치로 치닫게 만든 루소의 정치사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이론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루소에 대한 공격은 특히 19세기 사상가 이폴리트 텐(Hippolyte A. Taine)의 『현대 프랑스의 기원(1875-93)』에서 두드러졌다. 국가는 왜 난폭해졌는가? 다시 말해 혁명과업은 왜 나폴레옹의 등장과 같은 전제주의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여기서 텐은 프랑스혁명을 비판했던 버크(E. Burke)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고, 루소의 사상이 공화국 내부의 제 사회영역들에 대한 급격한 해체, 즉 ‘사적 관계의 해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가 난폭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단한다(Taine 2011, 888). 루소의 『사회계약론』³⁾은 ‘일반의 지(volonté générale)’의 구현체라는 절대적 위상을 국가에게 부여함으로써 인하여 그러한 국가의 지나친 권력남용—가족과 사회의 영역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를 파괴하는—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책을 예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소의 정신과 그에 따른 1789년 혁명가들의 행동은 그들 스스로가 전복시킨 구체제적 전제정치—예를 들어 나폴레옹 1세의 제1제정과 같은—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텐의 지적이다(Taine 2011, 240). 혁명가들은 구체제와의 단절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루이 14세가 ‘짐은 곧 국가’라고 주장할 때의 구체제적 전제주의를 오히려 예비하고 완성했다는 것이다(Taine 2011, 399).

텐을 비롯한 제3공화국 건설가들은 따라서 혁명적 변화의 역사과정에서 가족

3) Jean-Jacques Rousseau, “Du contrat social,” in *Œuvres complètes II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64). 이하에서 서지사항은 Contrat로 약칭함.

과 사회를 부당하게 희생하며 국가에게 부여한 지나친 특권 속에서 공화국의 실패—전제정치로의 회귀—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근심의 대상이었던 국가적 폭력성의 원인은 바로 루소의 정치사상 내부에 “더 이상 사회가 없다는 것,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개인을 그 망들 사이에 붙들어 놓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아무런 기구도 더 이상 없다는 것(Donzelot 2005, 50)”에 있다고 진단한다. 텐의 입장에서 제3공화국 건설가들의 이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따라서 국가와 개인 사이의 안정적인 충격흡수장치, 즉 공화국 내부에서 숨막혀하고 있는 ‘가족과 사회’의 영역을 어떻게 구해내고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⁴⁾ 루소의 공화국에 대한 텐의 비판은 이러한 고민의 핵심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 이폴리트 텐의 『현대 프랑스의 기원』을 중심으로 루소의 공화국이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적 논지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논의의 정치사상적 함의는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혁명정신의 두 요소

텐에 의하면 1789년 프랑스혁명의 정신은 ‘과학적 사고’와 ‘고전주의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이며(Taine 2011, 129-153), 이는 특히 루소의 정치사상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므로 루소에 대한 텐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텐이 언급하는 혁명정신의 두 요소가 루소의 정치사상에 어떻게 집약되고 표출되었다고 보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⁵⁾

-
- 4) 텐에 의해 부재한 것으로 언급되는 ‘가족과 사회’의 영역은 사실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이른바 ‘중간지대’를 의미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루소를 ‘과학적 사고’와 ‘고전주의적 사고’의 충실한 추종자로 파악하는 텐의 분석적 논증에 대해서는 Hippolyte Taine, *Les Origines de la France Contemporaine (1875-93)*

일반적으로 17·8세기 계몽철학은 갈릴레오(G. Galileo)의 천체론, 데카르트(R. Descartes)의 기계론, 뉴턴(I. Newton)의 물리학 등과 같은 과학적 지식에 의해 영향 받은 진보적인 인문사조이며, 따라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변의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체계로 이해된다. 이러한 계몽사조가 혁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쟁이 존재하지만, 샤흐띠에(R. Chartier)는 대체적으로 양자의 인과성을 강조하는 다니엘 모르네(Daniel Mornet)의 고전적 저작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 1715-1787(1933)』에 학자들의 공감감이 모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Chartier 1998, 28-29). 즉 “혁명이라는 결과를 산출하고 조직해 낸 것은 지성(Chartier 1998, 28)” 즉 과학적 진리(계몽주의)라는 인식이다.

그런데 텐이 보기에 17·8세기 사람들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루소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허상을 안겨주었다. 바로 인문학의 영역에서 ‘실제적 개인(individu réel)’을 대신하는 ‘인간일반(homme en général)’ — 계몽주의자들이 기대하는 ‘보편적 진리’ — 의 실재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허상이다(Taine 2011, 137-139).⁶⁾ 이러한 생각은 확실히 구성원들의 ‘전체의지(volonté de tous)’를 대신하는 이른바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의 실재성을 확신하는 루소의 신념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일반의지와 전체의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일반

(Paris: Robert Laffont, 2011), pp.129-152 참고.

6) 과학적 사고로 보편적 진리의 실재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일찍이 18세기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된 ‘자연주의이데올로기’가 진실이 아님이 증명되면서 의심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섹스의 역사』를 쓴 라커(Laqueur, Thomas, W.)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성 — 남과 여 — 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가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시기였다(라커 2000, 225-226). 그러나 부르디외(P. Bourdieu)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이 시기에 성차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인식하는 방식은 ‘수동 vs. 능동’과 같은 전통적 대립체계에 투영되고 있는 사회적 편견 — 예를 들어 남존여비와 같은 — 을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정치과정의 일부로 이해된다(Bourdieu 2000, 27). 다시 말해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남성의 신체적 특성과의 대칭관계 속에서 자궁을 여성의 본질로 이해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축적되면 결국 여성에게는 그들의 신체적 특징에 맞게 그들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동적 역할이 주어져야 하며, 남성에게는 그 반대로 정치나 사업과 같은 공적 영역의 일이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체계로 이어진다. 이것이 당시 ‘자연의 질서’이자 ‘사회의 질서’라고 주장되어진 이른바 ‘자연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적 실체가 될 것이다.

의지는 공적이해(intérêt commun)를 지향하지만, 전체의지는 사적이해(intérêt privé)를 지향하며 따라서 개별의지(volonté particulière)의 총체인 것이다(Contrat, II, iii, 371).” 주지하다시피 루소에게 있어서 일반의지는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전체의지와는 달리, “한결같고 확고하며 순수한(Contrat, IV, i, 438)” 보편적 진리이며, 따라서 사회의 재창조—사회계약—라는 그의 생각이 전개되는 궁극적인 원천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텐은 루소가 모든 것을 일반의지에 의존하려는, 즉 구성원들의 실제적인 관계와 구체적인 의사에 대면하기보다는 그것들을 거부하거나 적어도 회피하기 위해 가공의 ‘인간일반’ 개념에 의존하려는 위험한 의도를 발견한다. 이러한 추상화 작업은 결과적으로 혁명가들에게 ‘공중(le public)’ 과 구별되는 ‘인민(le Peuple)’, ‘국민(la Nation)’ 혹은 ‘시민(le Citoyen)’ 의 개념을(M. Vovelle 1985, 99-107), 또는 ‘공론(opinion collective)’ 과 구분되는 ‘여론(opinion publique)’ 의 개념을 허락하였지만,⁷⁾ 텐이 보기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가를 ‘일반의지의 구현’이라는 형이상학적 실체의 지위로 끌어 올림으로써 부분을 부정하는 총체로 만드는 잘못된 노선의 출발점으로 파악된다. “『사회계약론』은 군주주권을 인민주권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절대적이며, [...] 루소가 건설한 민주적 단위체 안에서 개인은 무(無)가 되며 국가는 전부가 된다(Taine 2011, 183).”

그런 의미에서 사회계약은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추상화의 절차를 정당화하는, 따라서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인 ‘국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사회의 제 요소들—“내 재산, 내 자녀, 내 교회, 내 의견(Taine 2011, 186)—에 대한 검토를 거부하는 개념이 된다. 이때 국가의 권력은 매우 강력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추상화의 최종적 결과물인 ‘국가’만이 보편적 진리라는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루소 역시 그러한 위험성을 파악했을 것이다. 국가의 전횡을 예방하려는 보편적 수단을 찾으면서 그는 ‘입법자’라는 탁월한 지성인—루소의 또 다른 표현에

7) 오쥬프(M. Ozouf 1989)는 18세기 ‘여론’ 개념의 관행에는 ‘개인적 의견들(opinions individuelles)’의 합이라는 인식과 함께 모든 개인들이 공유하는 ‘일반의지’에 근거한 것이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의하면 ‘신적인 존재들(Contrat, II, vii, 381)’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모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입법자는 국가 내부의 특별한 존재이다. 그의 타고난 재능이 그러하다면, 그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다. 그는 행정관도 주권자도 아니다. 그의 임무는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능은 인간의 권력과 아무 관련이 없는 특별하며 우월한 기능이다(Contrat, II, vii, 381-382).” 여기서 자코뱅의 존재근거가 설명된다. 그러나 텐은 루소가 예비한 입법자의 개념 역시 상기한 루소적 허상의 연장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자코뱅)은 썩어가는 부식토의 독버섯들이 그러하듯이 사회가 해체되는 순간에 태어난다. [...] 이제 모든 것은 낡고 잉여적인 것이 된다. 자코뱅은 즉각 무엇이 정당한 정부인지, 그리고 무엇이 좋은 법률인지를 안다. 파괴할 때만큼이나 건설할 때에도, 그들의 직접적인 방법은 가장 신속하며 가장 힘찬 것이다. 왜냐하면 2,600만 명의 살아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적합한 것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숙고가 필요하지만, 이론 속의 추상적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번의 결별이면 족하기 때문이다(Taine 2011, 575-578, 강조는 필자).” 결국 과학적 지식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루소로 하여금 이론적 추상화의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혁명정부(자코뱅)가 실제적인 존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들을 위해 구성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혁명과업은 사실상 실제적 개인들을 부정하는 정치과정으로 치닫지 않을 수 없다고 텐은 지적하고 있다 (Taine 2011, 418).

다음으로 텐이 지적하는 혁명정신의 두 번째 요소는 이른바 ‘고전주의적 사고’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세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한 거부를 기치로 내세운 고전주의는 앞서 언급한 계몽주의적 사고의 사상적인 토대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분질서(신/인간)와 더불어 군주제적 이분질서(왕/신민)의 이론적 기반을 허물었다. 이러한 고전주의적 사고의 가장 충실한 기획은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방법서설(1637)』 서

8) 유사한 맥락에서 김용민은 ‘일반의지’ 개념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루소가 ‘입법자’의 개념을 별도로 고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용민,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 개념 - 정당성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제5집(한국정치사상학회, 2001), pp.119-122 참고.

두에서 자신의 철학적 출발점들을 밝히면서 사물의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오직 ‘이성’ 뿐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 — 신학의 영역을 포함하는 — 에 대해 일러줄 수 있다는 믿음을 피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전주의자들은 사물을 지배하는 법칙, 즉 ‘변함없는 계율(préceptes invariables)’ 혹은 ‘영원히 진실된 교의(dogmes d'éternelle vérité)’ 를 밝히는 데 자신들의 관심을 집중한다(이환 1993, 226). 이때 그들이 밝히고자 하는 계율이나 교의는 ‘현실적인 것’ 이 아니라 전적으로 ‘관념적인 것’ 이다. 왜냐하면 전자가 “실제로 일어난 일” 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필연적으로 혹은 개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믿어진 것” 이며, 따라서 전자는 “일회적인 특수한 것” 으로 한정되지만, 후자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것” 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이환 1993, 241-242). 전자가 하나의 과학적 사실에 불과하다면, 후자는 보편적인 철학적 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텐의 입장에서 이러한 고전주의적 사고는 사물에 대한 무리한 단순화의 작업일 뿐이며, 그 기저에는 수학적 방법론 — 데카르트의 기계론⁹⁾에 철저히 반영되고 있는 — 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모든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무모한 믿음이 깔려 있다. “모든 연구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수학적 방법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라. 즉 매우 단순하고 매우 일반적인 몇몇 개념들을 추출하고 제한하고 고정하라.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어 그것들을 비교하고 조합하며, 그리하여 획득된 인공적인 구성물이 함축하는 모든 결과들을 가장 순수한 추론에 의해 연역하라. 그것이 바로 고전적 정신의 자연스러운 절차이다(Taine 2011, 151).” 루소는 이러한 수학적 사고방법으로 모든 현실을 투명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믿은 고전주의적 기획의 충실한 추종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텐이 보기에 이러한 고전주의적 사고는 위험한 기획을 동시에 함축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 에 대해 말한다는 미명하에 이성의 영역 ‘외부’ 에 존재

9) 데카르트는 사물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 사물이 철저히 ‘수동적’ 이라는 명제를 주장하고, 따라서 수학에 의해 그것이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Cf. 김성환, “데카르트의 운동론과 기계론,” 『철학사상』 제4권(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1994).

하는 불가해한 것들에 대한 파괴의 기획, 더 나아가 이성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몇몇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욕구, 감정, 사랑, 야망 등에 대한 거부 의 기획이 그것이다(Taine 2011, 147-148).¹⁰⁾ 혁명 당시 버크(E. Burke)와 같은 이른바 반혁명주의자들의 담론에서 중요하게 비판되었던 이른바 ‘사적인 것’ 들과 그것들의 연계된 형태로서의 ‘가족적인 것’ 들에 대한 거부 내지 회피 등은 그러한 기획의 대표적인 절차로 이해된다.

헌트(L. Hunt)는 혁명기에 대한 자신의 연구(1999a & 1999b)에서 혁명가들에 의한 사적 영역의 철폐과정이 궁극적으로는 공적 영역의 절대적 우위를 확립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국민공회는 가족 내부의 폭군과 같은 ‘아버지(군주)’로부터 ‘아이들(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로부터 가족과 교회를 대신하여 국가가 직접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자녀들을 알 수 없는 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통(G. Danton)은 “자녀들이 가정에 속하기 이전에 사회에 속한다”고 주장했고, 로베스피에르(M. Robespierre)는 “가족을 대신하여 국가가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Hunt 1999a, 101). 비록 혁명이 사적이고 가족적인 것의 모두를 부정할 수는 없었을지라도,¹¹⁾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부정을 사상적인 토대로 삼았던 것은 분명하다. 샤프띠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절대적인 투명성과 열정적인 만장일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혁명은 생활의 모든 면을

10) 1830년 7월혁명의 열매를 차지한 루이 필립(Louis-Phillippe) 왕정기에 기조(F. Guizot)는 공포정치의 원인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주권개념이라는 판단하에 경제적 능력과 이성적 능력에 따른 제한선거를 지지하고 혁명의 민주주의원칙에 제한을 가한다. 이에 대해 홍태영(2008, 108-111)은 기조의 주권론—이성주권론—이 프랑스혁명을 지배한 전통적인 주권론, 즉 루소의 인민주권론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분류하고 있으나, 텐에 의하면 기조의 주권론은 루소의 인민주권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11) 예를 들어 혁명가들에 의해 주창된 ‘자애로운 어머니’ 상은 여성을 폄훼된 사적 공간—가정—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였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하다는 긍정화의 작업을 동시에 요청하는 모순적인 이데올로기였다. 이에 대해서는 Carlo Pancera, “la tendre mère,” in Marie-France Brive (éd.), *Les Femm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2* (Toulouse: P. U. du Mirail, 1990), pp.473-479.

공적 감시 아래 두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혁명은 사적 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 모순되는 이해관계, 이기적인 향락, 그리고 은밀한 사업의 영역을 없애고자 하였다. **모든 행위의 공공성**은 새로운 질서의 조건이자 징표가 되었다 (Chartier 1998, 278, 강조는 필자)."

그러한 논리에서 사적인 것과 가족적인 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다시 말해 그것에 대한 파악이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이른바 '모호함'으로 인해 의심받기 시작했다.¹²⁾ 따라서 루소 사상의 실천가들은 구체제적 이분질서—'왕/신민' 혹은 '신/인간'—에 대한 해체 속에서 해방된 인민들—형제들—을 결집시키고 또한 이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개인과 국가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국가는 정치적 군주, 종교적 신 혹은 가족적 아버지를 대신하여 형제들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후견인이 되어야 하며, 그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방해하는 중간단체들에 대한 해체 및 제거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가가 해방된 개인들의 실질적인 보호자가 됨을 의미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들의 직접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텐은 과학적 사고와 고전주의적 사고가 혁명정신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라고 정의함으로써 혁명의 기원을 계몽주의는 물론이거니와 고전주의적 사고로까지 소급했고, 따라서 혁명은 이미 문화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관점에

12)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리에스(P. Ariès)의 『아동의 탄생(1973)』을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는 15세기경에 출현해 17세기경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이른바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존했음을 잘 보여준다. 즉 어른들의 육체적 삶과 관련됨으로 인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가족생활은 17세기 사람들에게 의해 새롭게 재평가되기 시작했지만, 그것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여전히 부정적인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17세기에 가서야 비로소 교회는 종교적 소멸의 바깥에서도, 즉 자기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축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육체와 너무나 긴밀하게 결부된 자연제도인 가족이 승배의 대상이 되자 가족의 세속적 지위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었다. [...] (그러나) 이 시기에 어른들의 오염된 세계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켜 원초적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려는 배려와 어른들 세계의 유혹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단련시키려는 의도로 교육자들이 새로 엄격한 도덕적 요구를 했던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었다" (Ariès 2003), pp.564, 585.

힘을 실어 주었다. 만일 혁명에 의해 가족과 사회가 해체되었다면 그것은 구체제적 전제주의와의 정치적 ‘단절’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문화적 ‘연장’ 이라는 것이 텐의 입장이다. 샤르피에는 이 점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서 혁명이 구체제와의 단절이라는 혁명가들의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신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모르네(D. Mornet)의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오히려 텐의 계보학—“구체제가 혁명을 낳았고, 그 혁명이 신체제(전제주의)를 낳았다(Taine 2011, 5)”—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한다(Chartier 1998, 33-37). 루소적 혁명과업과 나폴레옹 1세나 3세 등의 전제정치는 결국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텐의 평가이다.

따라서 만일 복잡하고도 풍부한 현실적 요소들이 혁명가들에 의해 추상적 개인과 추상적 의지로 대체되었다면, 그 책임은 루소에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루소를 통해 드러난 것이 된다. 이러한 시각을 전제로 할 때 혁명가들이 왜 구체제에 대한 정치적 전복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문화 일반—“모든 관습, 축제, 의식, 의복, 시대, 달력, 무게, 계절·달·주일·날의 이름들, 장소와 기념물, 성명과 세례명, 공손한 언어, 연설의 어조, 인사하고 말하는 방식 등(Chartier 1998, 35)”—에 대한 해체 및 재설정의 작업에 나섰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실제적 정치나 현실 속에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를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신비한 인간성으로 대체(Chartier 1998, 36)” 하는 고전주의적이며 계몽주의적인 사고를 혁명가들이 루소적 정치과정을 통해 증명해 보이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소에 대한 텐의 비판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론 속의 행위자(계약자)가 ‘욕망하는 실제적 개인’이 아닌 ‘무덤덤한 추상적 개인’ 이기를 강요한 혁명정신의 두 차원을 겨냥한다(Taine 2011, 147-151). 다시 말해 루소의 공화국에 대한 텐의 비판은 그의 사회계약이론을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이론을 실제적 개인과 실제적 의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III. 가족과 사회의 부재, 혹은 ‘사적 관계’의 해체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¹³⁾은 자연상태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불평등사회의 기원을 이론적으로 추론한다. 이러한 추론방법은,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Discours, 132-133), 가설적인 추상적 사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역사적 실재성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의 이론적 전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루소는 홉스(T. Hobbes)와는 달리 자연상태를 인간의 완전한 자족과 자유의 상태로 설정함으로써 문명화의 과정을 불평등화의 부정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전제정치는 가장 심각하며 가장 최종적인 단계의 불평등이 되며, 폭력에 의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그를 전복시키기 위한 또 다른 폭력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Discours, 191).

따라서 혁명은 물론이거니와 자코뱅의 테러리즘마저도 그토록 아름다운 인간의 자유를 파괴해버린 문명적 불평등—전제주의—을 재차 인위적으로 파괴·해체하는 루소적 역사관의 논리적 연장 속에서 정당화된다. 제3공화국 건설을 위한 투쟁의 중심에는 그래서 루소에 대한, 그의 테러리즘 옹호에 대한 증오가 있다. 그러나 공화국 건설과정이 전제주의에 대한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난관에 직면하여 텐은 루소적 혁명의 폭력성 그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문명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해체의 사상적 함의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루소의 사상에 대한 비판에 도달한다.¹⁴⁾

13) Jean-Jacques Rousseau,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in *Œuvres complètes II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64) 이하에서 서지사항은 Discours로 약칭함.

14) 텐은 프랑스혁명을 “이 세상에 나타난 가장 절대적인 전제주의(H. Taine 2011, 400에서 재인용)”라고 평가한 버크(E. Burke)의 보수주의 사상에 공감하면서도 이른바 ‘반혁명주의자’로 분류되는 보날드(L. de Bonald)나 르플레(F. Le Play)와는 달리 역사의 혁명적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영국의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대한 그의 긍정적 평가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그의 논지에 의하면 이 조약은 기존의 상황들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루소적 혁명이 야기하는 문명해체의 사상적 함의를 제시해 보자. 루소에 대한 텐의 공격은 그의 사상의 전제가 되는 사회계약 개념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된다. 완전히 평등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들 사이에 맺어진 루소의 사회계약은 ‘양도할 수 없고(inaliénable)’ ‘분할할 수 없는(indivisible)’ 주권개념에 근거한 것이다(Cf. Contrat, II, i & ii). 주권이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개별의지가 아닌 이른바 추상적인 ‘일반의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루소는 공화국이 개인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길 원한다. 그러나 텐이 보기에 그러한 공화국은 커다란 위험요소를 함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의지라는 추상적 개념에 바탕을 둔 공화국은 ‘만장일치’라는 하나의 신화적 형식을 완성하기 위해 개인들의 차이를 무시하는 일종의 전체적인 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Taine 2011, 186-187).

프랑스혁명의 경우 입법가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일반의지의 개념들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 이른바 ‘차이’를 내포하는 개인들의 실질적 자유—사적 관계—를 희생시키는 작업에 착수했고(Taine 2011, 579-583), 따라서 현실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일반의지를 가정하기 위해 ‘여론’의 개념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Taine 2011, 131-132). “구체제 말기 20~30년간 정치·행정·사법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침식해 들어간 여론의 개념은 분열과 사회적 정당화의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다. 실제로 여론은, 자신들이 여론과 관련된 법령만을 실현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여론의 판단을 선고할 자격이 있다고 자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Chartier 1999, 71, 강조는 필자).” 루소가 기대하는 공화국이 형성되는 순간 모든 개별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이른바 ‘절대권력체’가 탄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Taine 2011, 575-578). 루소의 공화국은 필연적으로 구체제적 전체주의를 해체한다는 미명하에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것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또 다른 전체주의로 치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Taine 2011,

을 승인하고 현존하는 그룹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긍정할 수 있는 반면, 프랑스혁명은 추상적 개인을 근거로 기존의 것들을 해체하는 것이기에 비판해야 하는 것이 된다 (Cf. Taine 2011), pp.187-206.

181-182). 이 지점에서 텐은 루소에 의한 문명해체의 사상적 함의를 도출한다. 즉 루소는 구체제적 전제주의와의 단절을 꿈꾸며 혁명적 폭력을 예비했지만, 그것의 역사적인 실천은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자유를 파괴하는 구체제적 전제주의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이른바 ‘연속성’이 바로 그것이다(Taine 2011, 399).

그렇다면 루소적 혁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파괴되거나 해체된 요소들은 무엇인가? 텐이 보기에 그것은 혁명가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전제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 사적 질서(가족), 사적 신념(종교) 등등(Taine 2011, 184-186)과 같은, 사적 관계가 연계된 형태로서의 ‘가족’과 ‘사회’에 대한 것들이다. 논증적인 사례로 혁명가들에 의한 ‘형제애’의 어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사적 관계에 의지하고 있던 구체제적 ‘가족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선언으로 이해된다(Hunt 1999a, 11). 이를 좀 더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구체제에 대한 정치담론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가에 대한 가족은 유가 자리하고 있다. 절대주의 이데올로기는 그것의 재현이나 담론에 있어서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샤르띠에는 이 당시 프랑스인들이 향유하고 있던 집단적인 가족은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789년 프랑스인들의 국왕에 대한 사랑은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진정서(Cahiers de doléance)는 전체적으로 군주에 대한 열정과 서사로 가득 찬다. 경건하고 열정적인 진정서의 서문은 군주에게 감사를 돌리면서 군주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과 그의 호의로 가능해진 새롭고 행복한 질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다. 진정서에 나타난 왕은 무엇보다도 **가장 나약한 아이들에게 조력적이며 자상한 아버지**이다(Chartier 1999, 169, 강조는 필자).”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영역에서 인민의 ‘군주’는 가족의 영역에서 자녀들의 ‘아버지’로 표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절대군주와 함께 아버지의 권위를 동시에 제거하길 원했고, 그럼으로써 자녀들 혹은 형제들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으며, 형제들 사이의 사회계약이 구체제의 군주적 혹은 부성적 권위를 새롭게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일 혁명가들이 ‘군주-아버지’의 제거를 통해 이른바 ‘자유롭고 평등한 형제들의 공동체’를 성취하길 원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가족의 죽음(M. Vovelle 1990, 15)’에 기초

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달리 말해 루소적 혁명은 가족관계에 대한 희생—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구성원들(자녀들 혹은 형제들) 사이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이의 평등과 모든 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하에 개인들의 실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집행권력의 절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무질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국가는 차이를 없애고 평등을 실현한다는 대의를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권력을 ‘무한한 것’으로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한 절대성은 결국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도 허용해야 하는 모순적인 조건으로 치닫기 때문이다(Taine 2011, 182). 그러므로 루소에 대한 텐의 비판은 혁명가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어느 특정 군주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구체제가 의지하고 있던 사적 관계, 즉 가족질서나 사회질서에 대한 국가적 파괴와 해체를 겨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토대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군주주권을 인민주권으로 전환하는 정치과업 못지않게 구체제적 개인관계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문화과업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만일 군주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형제들 사이의 계약이 혁명화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가족관계 역시 아버지의 권위에 의존하던 과거의 가족관계를 대신하여 코드화된 계약관계에 자신의 중요성을 양보해야 했다. 루소는 자연적 가족관계에서조차 이러한 계약적 관계의 모태를 발견한다. “모든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족사회이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뗫어져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필요한 기간뿐이다. 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자연적인 유대는 사라진다.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복종의 의무에서 벗어나며,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독립하게 된다. 만일 그들이 계속 같이 살게 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며, 가족 그 자체는 협약(convention)에 의해서만 유지된다(Contrat, I, ii, 352).” 루소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복종이 자신들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성을 확보할 때까지라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루소 이론의 실천가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사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해체를 정당화했고, 루소의 이론에 따라 그러한 해체를 바탕으로 ‘개인 대 개인,’ 더 나아가 ‘개인 대 국가’ 사

이의 공적 계약관계를 세우는 정치과정에 몰두했던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열거해 보자. 개인들 사이의 부당한 사적 관계를 정의로운 공적 관계로 전환하고자 했던 프랑스 혁명가들의 노력은 특히 ‘부자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서 두드러졌다. 먼저, 부자관계와 관련하여 혁명의회는 1792년 9월 자녀들에 대한 부권의 폭력성이 인민들에 대한 전제군주의 폭력성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보아 성인자녀에 대한 부권의 철폐를 논의하였고, 성년의 나이를 25세에서 21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Carbonnier 1990, 298).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혁명의회의 의원이었던 캄바세레(J.-J. Cambacérès)는 1793년 민법 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공화국 내부에 “더 이상 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Schnapper 1990, 331), 혁명의회는 ‘1793년 3월 8일 법’을 통하여 ‘가정교육’ 혹은 가사노동에 근거를 둔 ‘견습교육’을 이른바 국가에 의한 ‘국민교육’으로 대체하였다.¹⁵⁾

둘째,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혁명가들은 혼인이 당사자들의 평등한 자유의지에 근거를 두는 일종의 ‘시민계약’임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제하에서 결혼은 신적 서임으로 간주되어 한 번 성립되면 더 이상 파기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Lebrun 1986, 124-127), 1791년 헌법은 결혼을 ‘시민계약’으로 선언하였고, 이를 근거로 ‘1792년 9월 20일 법’은 부부 중 누구라도 그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파기될 수 있는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Dessertine 1990, 79). 이러한 논리에서 혁명은 가족 내부에 존재해 있던 부권적 특권들을 빠르게 해체시켰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 역시 더 이상 아버지만의 몫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Schnapper 1990, 326).

마지막으로 자녀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1791년 3월 12일 법’은 직계와 방계를 막론하고 동일 서열 간의 유산상속을 평등하게 규정하였고(Schnapper 1990, 334-335), 이어 ‘1793년 3월 7일 법’은 직계자녀들 사이의 유산상속의 평등성을, 그리고 같은 해 ‘10월 26일 법’은 방계자녀들에게까지도 상속권의 평등

15) 혁명기에 진행된 교육개혁 관련 사항은 Dominique Julia, “L’institution du citoyen: Instruction publique et éducation nationale dans les projets de la période révolutionnaire(1789-1795)” (1990)를 참고할 것.

성을 보장하였다(Hunt 1999a, 100). 이러한 노력의 측면에서 ‘1792년 1월 18일 법’은 입양자녀와 혈연자녀 간의 차별을 철폐하여 비혈연자녀에게도 그러한 평등성을 적용시켰다(Fortunet 1990, 344).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자유주의의 승리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특히 사적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몇몇 당혹스러운 문제들을 거부하거나 적어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텐에 의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소위 ‘어린이’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Cf. Taine 2011, 184-185). 루소의 공화국, 즉 자유롭고 평등한 형제들의 계약공동체에서 어린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들은 사회계약의 주체인 ‘개인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때 가족개념은 불가피하게 논쟁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가족이 생물학적이고 공간적인 이유로 인해 어린이의 존재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혁명기의 가족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루소적 혁명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명을 전후하여 어린이와 관련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 아리에스(P. Ariès)의 『아동의 탄생(1973)』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7~8세기를 거쳐 근대에 나타난 가족 관련 변화는 인구학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이 보다 근본적이다(Ariès 2003, 573). “18-20세기에 서양에서 일어난 인구 혁명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생물학적 속성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조들의 상당한 변화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체로서의 가족이라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의식**이다(Ariès 2003, 654, 강조는 필자).” 그는 프랑스의 전통사회가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발전시키지 못하다가 17세기 말경이 돼서야 그러한 의식을 표현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이른바 ‘친밀함’의 인식을 발전시키기 어려웠지만(Ariès 2003, 629), 18세기부터 가족이 부부 사이와 부모자식 사이의 “필수적인 애정의 공간(Ariès 2003, 36)”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녀들에 대한 “강박적 사랑(Ariès 2003, 648)”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아리에스는 비록 텐이 중요하게 언급하는 ‘고전주의적 이성’의 이른바 ‘투명성’ 기획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생활(가족)에 대한 발견과 인식이 그러한 투명성 기획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일종의 ‘인식론적 혼란’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Ariès 2003, 585-591). 다시 말해 사생활(가족)의 모호함과 폐쇄성은 모든 것에 대해 일러줄 수 있다는 고전주의적 이성의 투명성 기획에 제동을 걸었고, 그 틈새에서 이른바 ‘근대적 가족의식’—공적 관계의 투명성과 사적 관계의 모호함이 교차하는—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을 그가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가들에 의해 표출된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즉 한편에서는 가족을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따라서 어른들에게 용인되던 성적 욕망(사적 이해)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심과 두려움의 태도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을 공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그리하여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부자관계를 투명한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이성적 확신의 태도이다. 이러한 이중적 흐름 속에서 루소적 혁명과정은 자연스럽게 이성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 가족 구성원들의 사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혁명가들이 보기에 개인적이고 사적인 욕망은, 그것이 비록 ‘전체의 지’의 일부를 구성할지라도 공적이고 보편적인 행복을 나타내는 공동체의 ‘일반의지’와는 전혀 일치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어린이의 존재를 비교적 일찍부터,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만큼을 제외한 시점에서부터, 이른바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는 방식 속에서 어린이의 존재성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해지는 루소 기획의 사적 관계의 부인은 실제적인 것들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회피한다는 점에서 공화국의 완성을 지향하기보다는 그것의 파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텐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다시 말해 루소의 꿈은 사실상 개인들의 실제적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해칠 위험이 컸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3공화국 건설가들은 루소가 예비한 공화국이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양면적인 개념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다(J. Donzelot 2005, 49).

IV. 결론

루소적 혁명과 함께 펼쳐진 역사 속에서 유일한 승자로 나타난 것은 이른바 ‘공화국’이었다. 그러나 이 공화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텐은 사회의 모든 권력을 흡혈귀처럼 빨아들이는 일반의지의 ‘폭력성’과 동시에, 결국에는 일반의지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역할까지 부인해 버리는 역설적인 ‘자폭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텐은 루소에 의한 혁명과업이 구체제적 전제주의를 답습하면서도 사회의 실제적인 제 요소들을 파괴하는 ‘자발적인 무정부주의(l’anarchie spontanée),’ 다시 말해 무자비한 ‘테러리즘’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모순을 발견한다(Taine 2011, 313-390). 그러므로 텐이 보기에 진정한 공화국—그의 입장에서는 제3공화국—의 건설과 관련된 시급한 과제는 개인들의 자유계약이라는 자유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두면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일반의지’를 대신하여 그들의 관계를 충실히 엮어낼 수 있는 보다 세련된 계약원리를 고안해 내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정치사상사에서 ‘연대(solidarité)’의 원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뒤르켐(E. Durkheim)의 『사회분업론(1893)』과 『자살론(1897)』은 이 당시 등장한 연대개념이 루소에 의해 고안된 일반의지의 개념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그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이며, 따라서 개인들 역시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가는 그러한 관계들의 총체로 파악되며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의지는 실제로는 그러한 ‘연대의 조건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사회를 구성하는 사상적인 원리는 루소의 사회계약이론 저변에 깔려 있는 계약 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연대—그가 ‘유기적 연대’라고 명명—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국가는 바로 그러한 ‘연대의 범위 내에서만’ 국가 내부로의 개입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최일성 2011, 196). 제3공화국 건설가들이 보기에 프랑스혁명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계약이 사회적 연대의 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그 계약 자체를 사회구성의 절대원리—일반의지—로 추상화함으로써 함께 공존해야 했던 다른 사회적 연대들을 파괴하고 제

거하는 폭력적인 노선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텐의 루소의 공화국에 대한 비판의 의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환. 1994. “데카르트의 운동론과 기계론.” 『철학사상』 제4권.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 김용민. 2001.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 개념 — 정당성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제5집. 한국정치사상학회, pp.105-124.
- 이 환. 1993. 『프랑스 고전주의 문학』. 서울: 민음사.
- 최일성. 2011. “라이시테, 프랑스 민주주의 공고화의 이념적 토대: RMI법안의 국가개입주의 성격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 시론.” 『한국프랑스학논집』 제76집. 한국프랑스학회.
- 홍태영. 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프랑스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역사』. 서울: 후마니타스.
- Ariès, Philippe(아리에스, 필립), 문지영 역. 2003. 『아동의 탄생(1973)』. 서울: 새물결.
- Bourdieu, Pierre(부르디외, 피에르), 김용숙·주경미 역. 2000. 『남성 지배(1998)』. 서울: 동문선.
- Charbonnier, Jean. 1990. “Le statut de l’enfant en droit civil pendant la Révolution.” In Marie-Françoise Lévy (sous la dir.), *L’enfant, la famill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Olibier Orban.
- Chartier, Roger(샤르티에, 로제), 백인호 역. 1998.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1990)』. 서울: 일월서각.
- Dessertine, Dominique. 1990. “Le divorce féminin sous la Révolution: une quête du bonheur?” In Marie-France Brive (éd.), *Les Femm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2*. Toulouse: P. U. du Mirail.
- Donzelot, Jacques(동즐로, 자크), 주형일 역. 2005. 『사회보장의 발명: 정치적 열정의 쇠퇴에 대한 시론(1994)』. 서울: 동문선.
- Fortunet, Franoïse. 1990. “De l’égalité dans la différence: les enfants dans le droit révolutionnaire.” In Marie-Françoise Lévy (sous la dir.), *L’enfant, la famill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Olibier Orban.
- Hunt, Lynn(헌트, 린), 조한욱 역. 1999a.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맨스(1992)』. 서울: 새물결.
- Hunt, Lynn. 1999b. “Révolution française et vie privée.” In P. Ariès & G. Duby (sous la dir.), *Histoire de la vie privée 4. De la Révolution à la Grande Guerre*. Paris: Seuil.
- Julia, Dominique. 1990. “L’institution du citoyen: Instruction publique et éducation

- nationale dans les projets de la période révolutionnaire(1789-1795).” In Marie-Françoise Lévy (sous la dir.), *L'enfant, la famill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Olibier Orban.
- Laqueur, Thomas W.(라커, 토마스), 이현정 역. 2000. 『섹스의 역사(1990)』. 서울: 황금가지.
- Lebrun, François. 1986. “Le contrôle de la famille par les Églises et par les États.” In André Burguière et al. (sous la dir.), *Histoire de la famille 3: Le choc des modernités*. Paris: Armand Colin.
- Ozouf, Mona. 1989. *L'homme régénéré: essais sur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Gallimard.
- Pancera, Carlo. 1990. “la tendre mère.” In Marie-France Brive (éd.), *Les Femm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2*. Toulouse: P. U. du Mirail.
- Rousseau, Jean-Jacques. 1964.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In *Œuvres complètes II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 _____. 1964. “Du contrat social.” In *Œuvres complètes II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 Schnapper, Bernard. 1990. “Liberté, Égalité, Autorité: La famille devant les Assemblées révolutionnaires(1790-1800).” In Marie-Françoise Lévy (sous la dir.), *L'enfant, la famill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Olibier Orban.
- Taine, Hippolyte. 2011. *Les Origines de la France Contemporaine (1875~93)*. Paris: Robert Laffont.
- Vovelle, Michel. 1985. *La mentalité révolutionnaire*. Paris: Messidor.
- _____. 1990. “L'enfance et la famille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In Marie-Françoise Lévy (sous la dir.), *L'enfant, la famill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Olibier Orban.

투고일: 2012.08.19	심사일: 2012.10.04	게재확정일: 2012.10.08
-----------------	-----------------	-------------------

【ABSTRACT】

Rousseau's Republic, or Absence of the Private Relation: Hyppolyte Taine's Criticism of Rousseau

Choi, Il Sung | Hanseo University

Why did the French Revolution become so violent? At the moment that the Second French Empire collapsed, Hyppolyte Taine argued that the violence define the French Revolution in its entirety, not just confined to the Reign of Terror. He wrote in his *Origines de la France contemporaine* that this revolution, inspired by Rousseau's *Social Contract*, led inevitably to tyranny and despotism. Because Rousseau's General Will, that exists in the state in latent form, is not at the outset a means of deferring violence, it lacks the dynamism to transform itself into a viable political goal; namely, what Rousseau's political thought desire is the absence of private relation in the Republic. The center of Rousseau's circle is solely occupied by the abstract object of this General Will. There is therefore a close link between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and the Despotism: the General Will, the supreme authority, must act, not according to people's pleasure, but according to the legislator's wish. Taine examine in this point Rousseau's political thought as it relates to his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violence in nation-building. The apparent justification of violence in Rousseau's General Will points up the obvious contradictions to Rousseau's notion of the absence of private relation in the Social Contract.

Key Words | Rousseau, Republic, Despotism, General Will(Volonté Générale), Private Relation